

대전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11588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11588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가단11798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상

피고, 항소인 B

변론 종결 2021. 7. 14.

판결 선고 2021. 8. 18.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가단11798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피고, 제1심 공동피고 A, C(이하 'A', 'C'이라고만 한다)과 D 사이의 충남 부여군 G 답 2,592㎡ 중 각 1/6지분에 관한 2016. 3. 24.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와 A, C은 D에게 위 부동산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2016. 3. 28.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접수 제45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들'을 '피고와 A, C'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2쪽 1의 가.항을 '가. 원고는 H 주식회사로부터 D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374033 양수금 청구 사건의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여, 2019. 6. 25. 기준 원리금 합계 45,738,48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4줄 이하에 '(2016. 3. 24.자 증여를 이하에서는 '이 사건 증여'라 한다)', 같은 쪽 4~5줄 사이에 '다. 이 사건 증여 당시 D은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다.'를 각 추가하고, 같은 쪽 5줄의 '인정근거'란에 '다툼 없는 사실'을 추가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바,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피고가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증여받기 전에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행한 재산상의 법률행위 결과 그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가 충분히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법률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부동산 기타 재산을 무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지분의 이전에 관한 D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추정되고, 결국 D이 2016. 3. 24. 피고에게 위 1/6지분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조부 E가 피고와 A,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나 법무사의 착오로 D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할 뿐 D로부터 위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D이 E의 법정상속인으로서 2016. 2. 4.자 상속재산분할협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취득하였다가 그중 1/6지분을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1 작성의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선의 항변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일 당시 D이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전혀 몰랐으므로 피고에게는 D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한다.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가 한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403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와 D은 부녀지간으로, D은 2016. 3. 1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고 같은 달 28.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을 깨트릴만한 선의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는바,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나경선

판사박세진

판사강지엽